



보도 일시	2022. 8. 10.(수) 15:00	배포 일시	2022. 8. 10.(수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 이은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 오규철 (044-204-3037)

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, 압류·매각 유예,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.
 -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.31.로 연장된 '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,
 -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 - 또한, 지난 7.25.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'22.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.
 -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,

-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,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%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*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.
 - * 재해상실비율 = 상실자산가액 ÷ 상실전자산가액
-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*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- * 다만,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
-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(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)하거나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※ (온라인 신청방법) ① 홈택스 접속 → ② 신청/제출 →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→ ④ 민원명 '납부기한' 등 검색 → ⑤ '인터넷 신청'에서 신청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자연재해,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
 -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- 참고. 1.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
 2. 신고기한 연장 사유
 3. 압류·매각의 유예 사유
 4.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
 5.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

담당 부서 <총괄>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	이은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	오규철 (044-204-3037)
<협조>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	강상식 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	박형민 (044-204-3212)
<협조>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	윤성호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	안경민 (044-204-3252)
<협조>	법인납세국 법인세과	책임자	과 장	고근수 (044-204-3301)
		담당자	사무관	임경수 (044-204-3312)
<협조>	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	강동훈 (044-204-3401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신 (044-204-3412)
<협조>	조사국 조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근재 (044-204-3501)
		담당자	사무관	정민기 (044-204-3522)



참고 1

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(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)

-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-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-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
-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
 - 가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
 - 나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금융회사등·체신관서의 휴무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「세무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(세무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(회계법인을 포함한다)가 화재, 전화(戰禍)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(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)를 도난당한 경우

참고 2

신고기한 연장 사유(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)

- 납세자가 화재, 전화(戰禍)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
-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-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
- 금융회사 등(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)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
- 「세무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(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가 화재, 전화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

참고 3

압류·매각의 유예 사유(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)

-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

< 법인세법 제58조 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 >
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이하 "재해"라 한다.)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총액"이라 한다.)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.)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
2.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
< 소득세법 제58조 【재해손실세액공제】 >

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이하 "재해"라 한다.)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(이하 이 항에서 "자산총액"이라 한다.)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상실비율"이라 한다.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.)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
2.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

참고 5

납세유에 온라인 신청 방법

구분	홈택스 화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① 홈택스 접속 - ‘신청/제출’ 선택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② ‘일반 세무서류 신청’ 선택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③ ‘민원명 찾기’ - ‘납부기한’ 또는 ‘압류매각의유예’ 선택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④ ‘인터넷 신청’ 선택</p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번호</th> <th>민원유형</th> <th>민원사무명</th> <th>소관부서</th> <th>세목</th> <th>신청서식</th> <th>신청구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송인</td> <td>고지부 납부기한등 연장(구,징수유예) 신청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다운로드</td> <td>인터넷신청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송인</td> <td>납부기한등 연장(징수유예)의 권유특례 신청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다운로드</td> <td>세무서신청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송인</td> <td>납부기한연장 직권송인</td> <td>기타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없음</td> <td>세무서신청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송인</td> <td>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다운로드</td> <td>인터넷신청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송인</td> <td>재기종소기업인의 납부기한등 연장(징수유예) 신청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해당없음</td> <td>다운로드</td> <td>세무서신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번호	민원유형	민원사무명	소관부서	세목	신청서식	신청구분	1	송인	고지부 납부기한등 연장(구,징수유예)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인터넷신청	2	송인	납부기한등 연장(징수유예)의 권유특례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세무서신청	3	송인	납부기한연장 직권송인	기타	해당없음	없음	세무서신청	4	송인	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인터넷신청	5	송인	재기종소기업인의 납부기한등 연장(징수유예)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세무서신청
번호	민원유형	민원사무명	소관부서	세목	신청서식	신청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송인	고지부 납부기한등 연장(구,징수유예)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인터넷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송인	납부기한등 연장(징수유예)의 권유특례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세무서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송인	납부기한연장 직권송인	기타	해당없음	없음	세무서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송인	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인터넷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송인	재기종소기업인의 납부기한등 연장(징수유예) 신청	해당없음	해당없음	다운로드	세무서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